



# 2019년 균형발전사업(지원·제주·세종계정) 평가계획



# 목 차

- I 평가개요
- II 부처 자체평가
- III 균형위 상위평가
- IV 평가일정

# I. 평가개요

## 1. 평가근거

### ◎ **균특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~제14조의2**

#### ▶ **균특법 제9조(시행계획의 평가 등)**

- **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**

#### ▶ **균특법 시행령 제12조(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)**

- **부처는 부문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**

#### ▶ **균특법 시행령 제13조(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종합평가)**

- **균형발전위원회는 ……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 
매년 5월31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**

## 2. 평가체계

◎ **부처 자체평가(점수·등급 부여) → 균형위 상위평가**

# I. 평가개요

## 3. 평가대상

### ① '18년 균특회계(지원·제주·세종)로 지원된 신규, 계속 사업

- ▶ '18년 신규·계속사업 91개(4.3조원) 중 평가실익이 낮은 사업\* 제외한 68개(3.9조원) 평가

\* 성과관리 비대상사업, 10억미만 소액사업, 종료사업, 행정·운영경비지원사업 등

부처명		사업수(개)	사업비(억원)	부처명		사업수(개)	사업비(억원)
1	산업부	14	6,745	8	교육부	4	5,578
2	국토부	11	16,478	9	해수부	3	209
3	과기정통부	8	1,774	10	산림청	2	760
4	문체부	6	1,740	11	농진청	2	323
5	행안부	6	939	12	복지부	1	426
6	중기부	5	3,858	13	농식품부	1	63
7	환경부	5	426	-	-	-	-
합 계						68	39,319

# I. 평가개요

## 4. 평가단위

- ◎ **예산편성단위인 세부사업으로 평가하되, SOC사업\*은 단위사업 평가**
  - 국토부 6개 - 국가지원지방도, 산업단지진입도로, 광역도로, 광역철도건설, 대중교통지원, 도시BRT
  - 문체부 1개 - 관광레저개발육성(기업도시 진입도로지원)
  - 산업부 1개 - 경제자유구역지원(기타 기반시설지원, 주요기반시설 지원)

## II. 부처 자체평가

### 1.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·운영

#### ④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

- ▶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 총괄, 필요시 위원회 산하에 개별 분과구성 가능
  - ▶ 평가위원회 구성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, 다양한 분야의 균형발전전문가를 적절히 안배하고,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특정 직업군이 60%를 넘지 않도록 구성
  - ▶ 분과위원회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에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 1인 이상 포함
  - ▶ 피평가자의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평가절차에 이의신청을 포함
- \* 사업수가 적은 부처의 경우,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의 자체평가와 연계해 구성·운영 가능

## II. 부처 자체평가

### 1.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·운영

#### ④ 자체평가위원 선정기준

- ①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
- ②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
- ③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가
- ④ 해당 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 전문가 등

#### ④ 자체평가위원 제외기준

- ① 사업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
- ② 평가대상사업의 현재 과제책임자
-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참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전문가
- ④ 불성실·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
- ⑤ 상위평가 수행지원기관의 임직원
- ⑥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

# II. 부처 자체평가

## 2. 자체평가기준

### ⑥ 평가지표 및 점검항목

부문	평가지표	점검항목	배점	
			신규	계속
사업 기획 (40,20)	1.사업기획이 타당한가?	① 상위계획 및 균형발전목표와의 부합성	10	5
		② 사업내용과 사업취지(사업명)와의 부합성	10	5
	2.사업내용이 구체적인가?	③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구체성	10	5
		④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구체성	10	5
사업 집행 (30,30)	1.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?	⑤ 예산집행 점검·관리체계의 합리성	10	5
		⑥ 예산 집행 여부	10	5
	2.환류는 적절한가?	⑦ 사업환경변화 또는 추진과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여부	5	5
		⑧ 모니터링 결과 활용의 적절성	5	10
		⑨ 평가결과 또는 외부기관(국회·감사원 등)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적절성	-	5
사업 성과 (30,50)	1.당해연도 목표는 달성 하였는가?	⑩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	15	15
		⑪ 당해년도 성과목표 달성도	15	15
	2.균형발전기여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?	⑫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	-	10
		⑬ 공동체 이익 등 상생발전 기여도	-	10
감점	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 준수 등		-5	-5



# II. 부처 자체평가

## 2. 자체평가기준

### ④ 균형발전 기여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 예시

구분		세부 적용항목
균형발전 기여도	지역경제 발전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민의 소득증대, 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발전 효과</li> <li>· 산업체의 유입, 투자유치, 매출 증대 효과</li> <li>· 지역의 인구증가, 고용창출, 좋은 일자리 증가 효과</li> </ul>
	지역사회 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회인프라.서비스 향상 효과 (문화.레저.의료.복지.안전.교육 여건개선 등)</li> <li>· SOC 등 기반시설 확충 효과 (도로, 철도 등 교통시설과 생활기반 시설 개선)</li> <li>· 환경보전 및 재해위험 감소 효과 (대기.수질개선 등)</li> </ul>
사회적 가치 창출도	연계협력 상생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민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 효과</li> <li>· 지역간 · 세대간 · 분야간 격차해소 효과 (낙후지역 생활개선 등)</li> </ul>

## II. 부처 자체평가

### 3. 자체평가 결과산출

#### ④ 예산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

▶ 대상부처 : 산업부, 국토부

▶ 등급배분 : 우수 20%이하, 보통 65%내외, 미흡 15%이상

\* 다만, 예산규모가 큰 하나의 사업이 우수등급이 되어 우수등급 기준(20%)를 초과하더라도 인정

#### ④ 사업수 기준으로 상대평가

▶ 대상부처 : 과기정통부, 문체부, 행안부, 중기부, 환경부, 교육부, 해수부

▶ 등급배분

사업수(개)	3	4	5	6	7	8	9
우수	1	1	1	1	1	2	2
보통	1	2	3	4	5	5	5
미흡	1	1	1	1	1	1	2

☞ 사업수가 3개 미만인 부처는 상대평가 미 실시(산림청, 농진청, 복지부, 농식품부)하고, 90점 이상은 우수, 70점 이상 90점 미만은 보통, 70점 미만은 미흡으로 등급부여

# III. 균형위 상위평가

## 1. 평가기준

### ㉔ 부처 자체평가의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2개 부문을 평가

구분	평가지표	점검항목	배점
평가 과정 (20)	1.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?	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	10
		②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	10
평가 결과 (80)	2. 성과지표 및 평가등급 부여가 적절한가?	③ 성과계획서 성과지표·목표의 반영도	10
		④ 평가등급 부여의 적정성	40
	3. 평가의견 및 자체평가 결과는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?	⑤ 평가등급과 평가의견과의 부합성	20
		⑥ 등급배분 기준 준수 여부 및 전략적 왜곡 가능성	10
감점	제출기한 및 기타 평가지침 미 준수 등		-5

# III. 균형위 상위평가

## 2. 결과도출

◎ 평가결과 ‘적절’ 인 경우 부처 자체평가 결과 인정,  
‘부적절’ 인 경우 부처사업 전체에 대해 재평가

- ▶ **적절** : 총점이 85점 이상이고 ' 평가등급 부여의 적절성' ,  
'평가등급과 평가의견과의 부합성' 2개지표 모두 보통이상
- ▶ **부적절** : 적절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

☞ 재평가는 부처에서 제출한 사업추진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자체평가 측정방법과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

## IV. 평가일정

- ▶ 평가계획 및 평가지침 통보( '18.12월, 균형위 → 부처)
- ▶ 부처 자체평가 결과제출( '19.2월, 부처 → 균형위)
- ▶ 균형위 상위평가( '19.3~4월, 균형위)
- ▶ 평가결과 확정 및 대통령 보고( '19.4~5월, 균형위)
- ▶ 평가주체별 평가결과 공개( '19.6월, 균형위 및 부처)

**감사합니다**